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2월 1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엄샛별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제5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2월 1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엄샛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·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○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
○ 수집계획의 수립, 수립대상 및 수집 방법(안 제4조~제6조)

○ 마을공동체기록관 및 주민기록단의 운영(안 제7조~제8조)

○ 협력체계 구축과 관리 및 활용(안 제9조~제10조)

○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 등(안 제11조~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·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,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2019년 12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이전까지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·관리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,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음.
-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개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2019년 12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수집 주체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[1]으로도 확대되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지역의 민간기록물 수집 주체로서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명시[2]하였음.

○ 주요내용은

---

1) **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의)** 5. "영구기록물관리기관"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,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, **지방기록물관리기관**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.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2) **제46조의2(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)**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,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시·도 및 **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**. [본조신설 2019. 12. 3.]

- 본 제정 조례안은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민간기록의 자료 수집, 보존관리,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집계획의 내용, 수집대상 및 방법, 마을공동체기록관 조성·운영, 주민기록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와 관련하여 수집·관리되는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이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및 다양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·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○ 민간기록물은 그 생산 주체와 기록 형태가 다양하고, 수집된 기록물의 보존·활용 등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